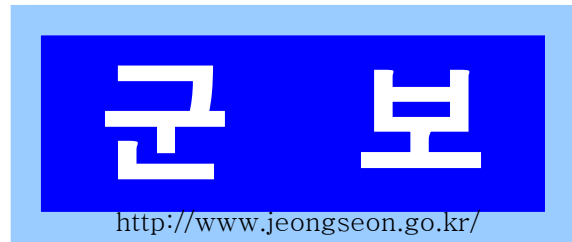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18호 2010. 5. 19.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0-55호 2010.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 정선군고시 제2010-64호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6차) 고시..... 2
- 정선군고시 제2010-68호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고시..... 3
- 정선군고시 제2010-69호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4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0-252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5
- 정선군공고 제2010-258호 정선(여량면) 군계획시설(공설묘지)사업 공사완료 공고.....9
- 정선군공고 제2010-270호 소하천 정비시행계획 공고..... 10
- 정선군공고 제2010-278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11
- 정선군공고 제2010-279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적발통보, 고지, 독촉,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3
- 정선군공고 제2010-281호 2010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공고..... 19
- 정선군공고 제2010-289호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0
- 정선군공고 제2010-290호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26
- 정선군공고 제2010-291호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27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고시 제2010-55호

2010.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0.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0. 4. 30.

정 선 군 수

1. 2010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가격기준일 : 2010. 1. 1.

나. 결정·공시대상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3번지 외 10,132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가격(토지·건물 일체)

2. 이의신청

가. 접수기간 : 2010. 4. 30. ~ 5. 31.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비치)

마.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정선군고시 제2010-64호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6차) 고시

정선군 임계면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6차: S/W운영부분)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5. .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살고 싶고 도시민이 찾고 싶은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해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 유지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도전1·2리, 직원1·2리
- 규 모 : 법정리 3, 행정리 5, 자연마을 15
- 면 적 : 7,008ha(농경지 330, 임야 6,501, 기타 177)
- 가구 및 면적 : 187호(농가 121, 비농가 66), 460명(남 250, 여 210)
- 사업내용(6차) : S/W운영부분 5개사업
 - 리더 및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홍보마케팅, 컨설팅, 권역운영지원

4. 사 업 비 : 138백만원(전체분 6,786백만원)

5. 사업예정기간 : 2010년 ~ 2011년(전체분 2007년 ~ 2011년)

6. 사업의 효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의 지속적 인 발전에 기여

7.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일괄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고시 제2010-68호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해제 내용			해제사유	비 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m ²)		
진골지구	고한읍 고한7리	붕괴위험	가	20,000	정비완료	'04.10.29

2010. 5. 12.

정 선 군 수

정선군고시 제2010-69호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		
고한9리지구	고한읍 고한9리 66-2번지 일원	붕괴위험	가	2,500	지반침하 및 주택 균열	
낙동리지구	남면 낙동리 산33-1번지 일원	붕괴위험	다	7,000	암반 균열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석문교위지구	화암면 석곡리 산124번지 일원	붕괴위험	다	3,200	낙석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2010. 5. 12.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10-252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0. 04. 26.

정 선 군 수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변화하는 여건에 부합하고 조사료 수확 등 농작업 대행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상으로 관내 농업인에 한해 영농지원 작업 대행(안 제2조)
- 영농지원은 경운, 배토작업에 한하며 65세이상이며 0.5ha 미만의 농경지를 소유한 농가에 작업대행을 하고 조사료 수확 작업은 면적, 연령 제한은 없으나 그 기간은 2일을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안 제6조)
- 농업기계 임대 및 영농지원 신청자는 계약서(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료 또는 영농지원 작업료를 납부함을 규정(안 제7조)
- 임대료와 작업료는 장비구입, 교체 등 사유발생시 결정함을 규정(안 제8조)
- 임대 및 영농지원 장비는 내구연수가 도래하지 않아도 중대한 결함 또는 과도한 수리비 발생시 폐기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0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농업기술센터 Fax 562-3963)에게 서면제출 또는 전화(☎033-560-2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개정조례 『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기계 임대사업” 을 “농업기계 임대 및 영농지원사업” 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농지원”이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서 보유한 기종으로 작업요원을 활용하여 관내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을 “농업기계 임대 및 영농지원사업의 내용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임대료 징수” 를 “임대료, 영농지원작업료 징수” 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임대기준)” 을 “(임대 및 영농지원 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지원은 신청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고, 농업기계의 임대는 기종 당 1회 1대를 원칙으로 한다.
- ②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자주식 장비의 임대는 정선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행한 교육이수증을 소지한 자와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자로 한다.
- ⑥영농지원은 경운, 배토, 조사료 수확작업에 한하며, 경운 및 배토작업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하고, 0.5ha미만의 농경지를 소유한 농가로 제한한다. 다만, 65세 이하인 자녀와 주소지를 같이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제외한다.
- ⑦영농지원 작업 중 조사료의 수확시기에는 경운 및 배토작업보다 우선하여 조사료 생산 작업을 실시하며, 조사료 수확작업은 면적과 연령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은 1회에 2일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의 제목 “(임대계약 및 출고)” 를 “(계약 및 출고)”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지원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야 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영농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업인 안전공제를 가입하고 별지 제1호 및 제1-1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임대료 및 영농지원 작업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 중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하고 매년” 을 “장비구입, 교체 등의 사유발생 시 임대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종별 임대료와 영농지원 작업료를 결정하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료” 를 “임대료 및 영농지원 작업료” 로 한다.

②다만,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직접 운송하여 사용 할 때에는 임대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임대사업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의 제목 “(임대계약의 취소)” 를 “(계약의 취소)”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을 “계약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계약” 을 “계약” 으로 한다.

제1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유기종이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출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제 6항 중 단서조항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기계 종합공제를”을 “임차인은 농업인 안전공제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영농지원 신청서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영농지원 작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농업기계명 :
2. 지원기간 :
3. 작업종류 : (작업면적 : 평)
4. 지원조건

○ 영농지원 작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농경지 조건과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신청서 작성시 신분증 지참

20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정 선 군 수 귀하

정선군공고 제2010-258호

정선(여량면) 군계획시설(공설묘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정선군고시 제2005-48호(2005.08.26)로 실시계획인가한 정선(여량면) 군계획시설(공설묘지) 사업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0. 4. 30.

정 선 군 수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 산 2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정선(여량면) 군계획시설(공설묘지)사업
○ 명 칭 : 공설묘지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단위 : m²)

시설명	도 시 계 획 결 정(m ²)		실 시 계 획 인 가(m ²)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규모	기시행	금회시행	향후계획	
묘 지	정선공설묘지	129,500	—	129,500	—	정선군고시 제2005-48호 (2005.08.26)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성 명 : 정선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마. 사업기간

- 착 수 일 : 인가일로부터
○ 준 공 일 : 2010.02.03.

정선군공고 제2010-270호

소하천 정비시행계획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소하천(직원천)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6.

정 선 군 수

소하천명	사 업 개 요									비고
	공 사 명	공사위치		사 업 량(m)			공사기간		공사목적	
		시점	종점	축제	호안	기타	착공	준공		
직원천	2010 직원천 정비사업	임계면 직원리 400-2번지	임계면 직원리 494번지	300	300		‘10.05	‘10.10	수해피해로 주민들의 재산과 농생활을 안정적 하여	손실 보상

※ 열람서류

1. 토지조서 1부.
2. 실시설계도서(재난안전관리과 비치)
3. 위치도(재난안전관리과 비치)

정선군공고 제2010-278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0. 05. 06.

정 선 군 수

1. 강제처리대상차량 : “불입내역 참조”

2.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10년 06월 05일 이후

3. 보관 및 강제폐차 장소 : 관허폐차장

4. 공 고 기 간 : 2010년 05월 06일 ~ 2010년 06월 05일(30일)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나.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벌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으로써 귀하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한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의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권리행사 통지내역

등록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
		주민등록주소지
경북32고5389	임종석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383번지 8호 12/ ■경북 김천시 부곡동 1328번지 주공2차아파트 201동 1506호
경남32거5401	윤문걸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7번지 1호 26/4 동강아프리에 116동 203호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993번지 2호 101호
21너5885	장주관	■경북 경산시 중산동 542번지 (세기자동차상사"상품용") ■경남 진주시 본성동 3번지 2호 1/2
부산30도3691	박찬우	■부산 사상구 주례동 519번지 6호 4/3 주례맨션 14동 506호 ■부산 사상구 주례동 519번지 6호 12/3 주례맨션 14동 506호
경기35루7270	고환기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29번지 2호 35/3 산본프라자 5층동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29번지 2호 35/3 산본프라자 5층동
경남32나6985	이학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87번지 4호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87번지 4호 19/12
79머9882	신학제	■경남 거제시 옥포동 233번지 12/5 삼도로알맨션 105동 107호 ■경남 거제시 옥포동 233번지 12/5 삼도로알맨션 105동 107호
74가1789	ALI RIYASAT	■서울 종로구 송인동 72번지 70호 연남 206호 ■서울 종로구 송인동 72번지 70호 연남 206호
경기46마4211	김순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56번지 12호 8/1 동현빌라 B03호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274번지 9호 3/3 301호
경북51구2358	정성윤	■경북 경산시 삼풍동 511번지 15호 17/3 102호 ■대구 달서구 진천동 265번지 52호
강원29가2496	백미선	■강원 춘천시 중앙로2가 15번지 1호 1/1(51-4951) ■경기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5139번지 6/
경기3소7709	고영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7번지 9호 10/2 ■서울 양천구 목동 731번지 1호 27/3 121호
강원7러1033	신춘기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6번지 95호 18/1 ■서울 강동구 성내동 283번지 18호 11/9
05더4030	(주)신화렌트카	■경기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275번지 3호 ■경기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275번지 3호

정선군공고 제2010-279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적발통보, 고지, 독촉,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사전통지), “도로교통법” 제161조, 동법시행령 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05. 06.

정 선 군 수

1. 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 독촉,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0. 05. 06 ~ 2010. 05. 21(15일간)
4. 공고내용 : 상기 과태료부과 대상자 및 납부의무자는 공고기간 내 과태료 납부 및 의견제출등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의견 및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 및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가산금등에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이의신청 제출처 : Fax) 033-560-2174,
☆ 우편: 233-87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 독촉,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내역(4.1~30)

차량번호	처리 상태	반송사유	성명	반송된 주소
03마6134	압류	수취인미거주	김형수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787번지 10호 19/5
경기30두7167	압류	수취인불명	이성복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567번지 1통
10누5163	고지	수취인불명	최관옥(공동소유자: 최민수)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752번지 1/2
경기89마3759	압류	수취인불명	화인테크(주)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84번지 18호
부산30녀8776	고지	수취인불명	(주)디앤에프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52번지 3호 강성빌 딩-301
09조1927	압류	수취인불명	김형국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06번지 23호 12/1
경기93고7013	압류	수취인불명	이재범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83번지 3호
14우4086	압류	수취인불명	대신자동차매매할부 산업 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9번지 (상품 용)
64라6946	압류	수취인불명	(유)은중모터스 **상품용**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663번지 2호 103동 2 층 9호
37구9401	고지	수취인불명	조성익(금강자동차매 매상사)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151번지
경기76자9063	고지	수취인불명	정기훈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49번지 8호 1통
14우4086	고지	수취인불명	대신자동차매매할부 산업 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9번지 (상품 용)
07머9902	고지	수취인불명	송경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30번지 1호 40/4 당산현대5차아파트 505동 403호
경기35녀5927	압류	수취인불명	박서현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 1393번지
91버1984	고지	수취인불명	송영진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74번지 74호 4/1
05구1949	고지	수취인불명	김정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807번지 3호 3/1 302호
05구1949	고지	수취인불명	김정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807번지 3호 3/1 302호
05구1949	고지	수취인불명	김정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807번지 3호 3/1 302호
경기35녀5927	압류	수취인불명	박서현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 1393번지
10마1719	고지	수취인불명	권순희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4번지 9/1
02부8270	압류	수취인불명	윤진수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3가 1433번지 1호
09서3846	고지	수취인불명	(주)아시아자동차매 매상사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733번지 24호

차량번호	처리 상태	반송사유	성명	반송된 주소
45마9859	압류	수취인불명	송해성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257번지 1/
62어4460	고지	수취인불명	차사랑무역(합)상품 용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45번지 5호
경기57더5628	고지	수취인불명	박진안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239번지 1호 44/
01라2360	독촉	우편함투여	이정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83번지 13호 3/1
78저6819	독촉	우편함투여	송구남	전라남도 순천시 생목동 45번지 1호 10/1
93다3670	독촉	우편함투여	이환우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789번지 1호 1/1 호반아 파트 101동 301호
충남30마3907	압류	우편함투여	상도산업개발(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05번지 1호
02다9544	압류	우편함투여	김영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번지 1호 6/4 주공사북아파트 5동 108호
01소8412	압류	우편함투여	임종혁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6번지 7호 43/3 예성유토피아 102동 702호
38허7393	독촉	우편함투여	(주)푸른렌트카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47번지 3호
61로6557	고지	우편함투여	김지은외1(최상진)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229번지 7/3
61로6557	고지	우편함투여	김지은외1(최상진)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229번지 7/3
14조5709	고지	우편함투여	박영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84번지 1호 23/2 동 래우성아파트 101동 913호
42다9176	고지	우편함투여	신종수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539번지 5호 9/2 신명보 람아파트 102동 303호
06주3020	고지	우편함투여	전상철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794번지 3호 33/2 주공아파트 703동 2501호
대전31모4104	고지	우편함투여	안동규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720번지 34/ 2
62구5642	고지	우편함투여	박덕철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51번지 7호 36/1 한진오피스텔 612호
02다3726	고지	우편함투여	(주) 크레스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93번지 6호 대룡테 크노타운6차 14층 1405
서울33더4082	고지	우편함투여	최석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번지 74호 6/5 남산맨션 1001호
10오9502	납부	우편함투여	고영진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832번지 1호 48/7 부 영사랑으로 303동 1401호
94거1106	압류	우편함투여	김성수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603번지 38통 2반 세광엔리치빌 202동 302호
전남33나1455	압류	우편함투여	강대근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89번지 3호 13/3
72허1124	압류	우편함투여	김지훈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245번지 구새들마을 102동 805호

차량번호	처리 상태	반송사유	성명	반송된 주소
경북71노3863	압류	우편함투여	(주)리오관광호텔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199번지 1호
서울52마9693	압류	우편함투여	유환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8/6 주공아파트 217동 304호
서울52마9693	압류	우편함투여	유환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8/6 주공아파트 217동 304호
서울52마9693	압류	우편함투여	유환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8/6 주공아파트 217동 304호
17서8203	압류	우편함투여	박수보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170번지 1호 16/3 화명동대림타운 204동 504호
51모3720	대체 압류	우편함투여	유현숙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번지 8호 8통 8반
충남46가2756	압류	우편함투여	임미순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281번지 동아(아) 102-203 T.33-7972
80거2770	압류	우편함투여	주-골프디자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8번지 4호
17거9816	압류	우편함투여	현수환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4번지 18/5 주공아파트 9동 306호
경기57너8572	압류	우편함투여	이보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46번지 6호 2/5 서울주택 B동 303호
21나6374	압류	이사감	서영교(국제자동차상사)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1201번지 "상품용"
21나6374	압류	이사감	서영교(국제자동차상사)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1201번지 "상품용"
충북31두7490	압류	이사감	권종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136번지 1호 6/
33더9329	고지	이사감	기분좋은에너지(주)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61번지 5호
33더9329	고지	이사감	기분좋은에너지(주)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61번지 5호
53부1767	압류	이사감	조선희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80번지 2/
강원28노4394	대체 압류	이사감	이우호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33번지 43호 3/2
93두6596	미부 과	이사감	최임식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 147번지 3호 11/13 동원탄좌동원아파트 아동 303호
충남30마3907	미부 과	이사감	상도산업개발(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05번지 1호
88라3706	미부 과	이사감	김상호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527번지 3호 19/
강원28고5115	미부 과	이사감	오홍춘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457번지 2호 1/2
경북34누1937	미부 과	이사감	이문길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44번지 3호
강원28노4410	고지	이사감	동원탄좌노동조합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0번지 5/

차량번호	처리 상태	반송사유	성명	반송된 주소
69수5590	고지	이사감	조진희외1(조덕희)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28번지 20호 1/1
69수5590	고지	이사감	조진희외1(조덕희)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28번지 20호 1/1
69수5590	고지	이사감	조진희외1(조덕희)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28번지 20호 1/1
17머8621	고지	이사감	김용직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28번지 1호 2/3 광안빌라 301호
80도8466	고지	이사감	주식회사 엘에이푸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03번지 222호
21루8800	미부 과	이사감	최병철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 264번지 13호 3층 3/1
서울51너6021	압류	이사감	주-일일신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48번지 9호 ☎ 3473-0637
서울39라2214	독촉	이사감	박순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25번지 11호 6/4
경북31누5600	압류	이사감	김기종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156번지 9호 T811/3555
65러1398	독촉	이사감	강석우	경상남도 창원시 서상동 208번지 4호 39/3
41서4367	압류	이사감	(주)삼원종합건설팅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1번지 2호 2층 203호
03부4413	독촉	이사감	주식회사에버테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6번지 9호 남동공단 135블럭 8로트
41서4367	독촉	이사감	(주)삼원종합건설팅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1번지 2호 2층 203호
93두4074	압류	이사감	김수경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953번지 21/4 제천오피스텔 308호
서울39라2214	압류	이사감	박순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25번지 11호 6/4
03부4413	독촉	이사감	주식회사에버테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6번지 9호 남동공단 135블럭 8로트
경북11허8707	고지	이사감	최석환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20번지 윤성모닝타운 102동 502호
03부4413	고지	이사감	주식회사에버테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6번지 9호 남동공단 135블럭 8로트
06모3540	압류	이사감	김옥현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316번지 15호 14/2
서울85너9463	압류	이사감	주-라스피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4번지 4호 이레오피스텔
96서6734	압류	이사감	노육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593번지 1호 9/
23허1531	고지	이사감	김진환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815번지 3호 대준원룸 106호
05거2252	압류	이사감	김윤식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48번지 5호 20/2

차량번호	처리 상태	반송사유	성명	반송된 주소
경북31누5600	압류	이사감	김기종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156번지 9호 T811/3555
52누1750	압류	장기간방치	김영만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410번지 1호 11/17 쌍용아진그린타운 410동 1102호
03저4276	압류	장기간방치	조영철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487번지 8호 44/4 302호
23허2189	압류	장기간방치	박점서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47번지 5호 6통 6반
23허5900	압류	장기간방치	김영희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87번지 3호 5통 2반
09허8593	압류	장기간방치	차상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성원 쌍떼빌 106 동 1908호
54구9038	독촉	장기간방치	박상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73번지 6호 28/4
경기32가7376	고지	장기간방치	윤창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55번지 13호 20/2 103호
39가3582	압류	주소불명	이성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81번지 7호 2/6 1층호
07소1603	고지	주소불명	박진영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41번지 8호 1/4

정선군공고 제2010-281호

2010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검사대상(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관수동저울, 접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측중기

2. 검사일정

읍·면별	검사일정 및 시간	장 소	비고
정 선 읍	2010. 6. 15 (10:00 ~ 16:00)	정선실내체육관(역전)	
고 한 읍	2010. 6. 16 (10:00 ~ 16:00)	고한읍사무소	
사 북 읍	2010. 6. 17 (10:00 ~ 16:00)	사북읍사무소	
신 동 읍	2010. 6. 18 (10:00 ~ 16:00) 2010. 6. 18 (14:00 ~ 16:00)	신동읍사무소 함백출장소	
화 암 면	2010. 6. 21 (14:00 ~ 16:00)	화암사무소	
남 면	2010. 6. 21 (10:00 ~ 12:00)	남면사무소	
여 량 면	2010. 6. 22 (09:30 ~ 12:00)	여량면사무소	
북 평 면	2010. 6. 22 (14:00 ~ 16:00)	북평면사무소	
임 계 면	2010. 6. 23 (10:00 ~ 16:00)	임계면사무소	

3. (정기검사연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기검사 종료일 10일 이내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해당 읍·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읍·면 산업개발부서 비치)

4. (소재장소정기검사) 계량기가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검사일전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해당 읍·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읍·면 산업개발부서 비치)

5.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업경제과(560-2357), 읍·면 산업개발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5. 12.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10-289호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0. 05. 12.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개정취지

- 농지법」의 개정('09.11.28시행)으로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농업정책과(전화 560-2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①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부
② 현행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1부.
③ 농지법 발췌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1991. 02. 02 조례 제1464호)

개정(1996. 07. 03 조례 제1665호)

개정(1999. 08. 20 조례 제1790호)

법제명 변경 및 개정(2008. 05. 19 조례 제2116호)

개정(2009. 04. 08 조례 제2157호)(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관리위원회 명칭) 농지관리위원회 명칭은 정선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라 한다.

제3조(농지관리위원회 관할구역)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당해 읍면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8조의 위원회의 기능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2. 기타 농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리

제5조(위원회의 위원정수) 읍면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제6조(위원회의 추천 및 선임) ①각 리장은 군수로부터 법 제45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추천을 요청 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자 1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각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08.20>

④군수는 추천서를 검토한 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2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제척, 기피 및 회피) ①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위원이 다음 각호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위원회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조례개정의 건의) 위원회는 이 조례가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 변동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에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위원장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관할 농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기타 위원은 심사·확인대상 농지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과 심사·확인대상 농지 소재지와 인접한 농지의 농지관리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삭제 1999.08.20>

관계법령 발췌

□ 농지법

<개정 전>

제44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농지와 농지 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동지역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구(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는 동지역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그 관할 구역에 농지가 없는 시·구·읍 또는 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지역 특성과 농지 분포 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구·읍 또는 면에 하나의 농지관리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제45조(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할 시·구·읍·면의 장
2. 관할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인 시·구·읍·면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자
3. 관할 시·구·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각 1명

③위원장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할 농지의 면적이 넓은 시·구·읍·면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제46조제3호에 따른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⑤위원의 임기·선임·해임,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직·회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농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확인과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7조(경비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제2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후>

제44조 삭제 <2009.5.27>

제45조 삭제 <2009.5.27>

제46조 삭제 <2009.5.27>

제47조 삭제 <2009.5.27>

제48조 삭제 <2009.5.27>

정선군공고 제2010-290호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0. 5. 13.

정 선 군 수

사본의 종류	일반사본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고
선 거 인 명 부	64.02원 (A4용지 1매당 작성비용)	광학디스크(CD) 700원+(23원×면수) A4용지기준	
부재자신고인명부	64.02원 (A4용지 1매당 작성비용)	광학디스크(CD) 700원+(23원×면수) A4용지기준	

정선군공고 제2010-291호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공직선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14.

정 선 군 수

1. 열람기간

2010년 5월 19일부터
2010년 5월 21일까지 } 3일간(공휴일에 불구함)

2. 열람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열람은 열람시간 제한 없음)

3. 열람장소

장 소 명	소 재 지	비 고
정선읍사무소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31(봉양리 210-1)	
고한읍사무소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고한리 125-4)	
사북읍사무소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65(사북리 317-48)	
신동읍사무소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예미리 759)	
화암면사무소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화암리 393-1)	
남 면사무소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문곡리 103-1)	
여량면사무소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여량리 305-3)	
북평면사무소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6(북평리 222-2)	
임계면사무소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5(송계리 773-1)	

4.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주소 : <http://www.jeongseon.go.kr>

5. 인터넷 열람방법

정선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거인명부 열람 배너창의 선거인명부 열람을 클릭하시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